민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광온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5253 발의연월일: 2022. 4. 13.

발 의 자: 박광온 · 민병덕 · 윤영찬

송갑석 · 김영배 · 전용기

홍성국 • 민형배 • 김철민

김홍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우리나라의 연령 계산방식을 살펴보면 일상생활에서는 출생연도부터 1살이 되고, 매 해마다 1살씩 증가하는 한국식 연령 계산방식인 이른바 '세는 나이'를, 「민법」을 비롯한 대부분의 법률 및 이를 근거로 한 국가기관의 행정처분 등에서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역에 의한 연령 계산방식인 '만 나이'를, 「병역법」, 「청소년 보호법」 등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'연 나이'를 사용하고 있음.

그런데 이와 같은 법률과 일상생활 간 연령계산 및 표시방식의 차이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비용 낭비 및 외국에서는 용례를 찾아보기힘든 한국식 연령 계산방식에 따른 정보전달의 혼선, 특정 시기의 출산기피현상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여러차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현행법에 연령의 기산점 뿐만 아니라 계산 및 표시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여 연령 계산방식의 혼용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그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하려는 것임(안 제158조).

법률 제 호
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8조의 제목 "(年齡의 起算點)"을 "(연령의 기산점 등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 목 외의 부분) 중 "算入한다"를 "산입하여 역(歷)에 의하여 이를 계산 한다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.

- ② 연령을 표시할 때는 제1항에 따라 계산된 연수(年數)로 표시한다.다만, 연수를 계산하고 1년에 이르지 아니한 잔여일이 있는 경우에는 연수에 포함된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 월수(月數)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.
- ③ 연령의 계산 및 표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第158條(年齢의 起算點) 年齢計算	第158條(연령의 기산점 등) ①
에는 出生日을 <u>算入한다</u> .	산입하여
	역(歷)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.
<u><신 설></u>	② 연령을 표시할 때는 제1항
	에 따라 계산된 연수(年數)로
	표시한다. 다만, 연수를 계산하
	고 1년에 이르지 아니한 잔여
	일이 있는 경우에는 연수에 포
	함된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
	계산한 월수(月數)를 함께 표시
<u><신 설></u>	<u>할 수 있다.</u>
	③ 연령의 계산 및 표시에 관
	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
	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
	법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
	른다.